

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서

※ [] 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
			10일
신고인 (대표자)	성 명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
업소명			
소재지	(전화번호 :)		
겸업 여부			
안전관리 책임자	성 명	면허번호	
	생년월일	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	
위탁제조 품목명			

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검역본부장·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신고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「약사법」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 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	수수료 10,000원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만 해당합니다) 2. 안전관리책임자의 의사면허증 또는 약사면허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안전관리책임자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